

# 부 산 영 락 공 원

## 제1영락원 (봉안당) 사용기간 만료 안내

1995. 3. 1. 부로 운영되고 있는 제1영락원 총 사용기간(30년)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가족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(관련근거)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(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) 제4조(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)
- (대 상 자) 1995. 3. 1. 이후 안치되어 있는 고인(유골)
- (만료일자) 2025. 2. 28. 부터 순차적으로 도래
- (협조사항)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고인(유골) 인도 신청
- (미신청시) 허가 취소 후 공원 내 양지바른 곳에 합동으로 매장
- (신 청 자) 최초 사용허가 신청자 또는 사용기간 연장 신청자
- (대상조회)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 내 고인정보 열람 활용
- (개장이후) 다른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 후 조치방법 선택
- (참고사항) 추모공원 봉안당은 사용기간이 합산 적용됨에 따라 이관 불가 기 허가된 벽식봉안당(가족단), 가족봉안묘 제외

### < 예 시 >

1. 제2영락원 옆에 위치한 산골시설 사용허가 신청,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원 내 양지 바른 곳에 합동으로 매장 예정이며, 다른 고인과 섞여 되찾을 수 없습니다.
2. 사설 봉안시설(종료시설 등)로 이관 가능여부, 사용료 등은 e-하늘 홈페이지 내에서 부산인근 봉안시설 조회 후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.
3. 예로부터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산골(산분)은 법적으로 가능하나, 개별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 내 산골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예) 영락공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산골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산골 예정지 인근에 인가가 있거나,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, 다른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 등을 피해 별도의 표시 없이 산골하는 방법 등도 신중하게 선택 필요

- 문의사항: 제2영락원 봉안당 사무실(☎ 790-5016, 5017, 5019)

### < 영락정 산골시설 >



### < 합동 묘지 >

